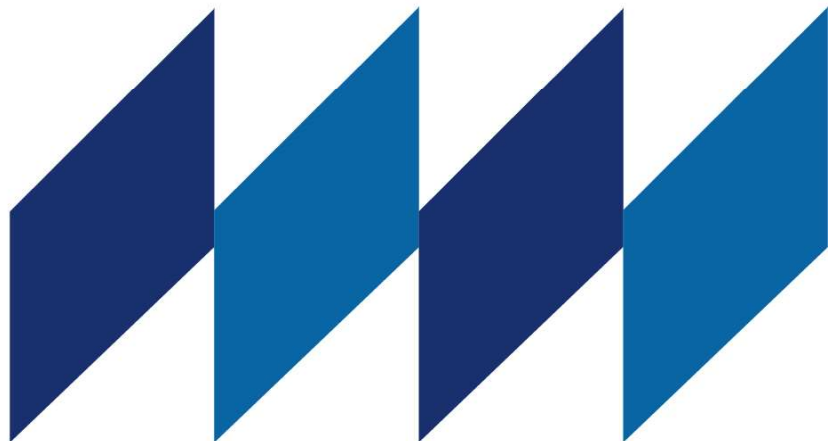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① 본 프레임워크는 JB금융그룹(이하 ‘그룹’)의 ESG 미션인 “더 나은 미래로, 함께하는 JB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그룹의 ESG전략 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원칙과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룹 내 계열사가 실행지침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활성화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다음의 하위 규정을 운영하며, 각 규정은 본 프레임워크의 원칙을 준수하며 세부 절차와 관리 방법을 규정한다.

1.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 그룹의 여신·투자 활동에서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평가, 관리하기 위한 그룹 공통의 기준
2. 기후금융 관리지침 :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관리 기준
3. 임팩트금융 관리지침 : 그룹의 금융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정의, 평가 및 운영에 대한 기준

제 2 조 (정의) 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2.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금융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기반한 녹색금융과 고배출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으로 구분한다.
3. 「녹색금융」은 자금 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고, 이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채무자 또는 피투자자의 국적, 녹색·전환금융의 취급통화, 녹색경제활동의 소재 국가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일몰기간 동안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그룹 탄소중립 및 포트폴리오 전환에 기여하는 금융으로 정의한다.

5. 「임팩트금융」은 재무적 수익과 더불어 측정 가능한 사회적·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금융활동으로, 그룹의 ‘임팩트금융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제 3 조 (기본 원칙) 그룹은 국제적 합의 및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금융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국제 기준 준수 : 파리협약¹⁾,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²⁾,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 기준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준수하고 이를 금융 활동에 반영한다. 또한, 국제금융공사(IFC)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이행표준³⁾, 적도원칙⁴⁾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용하여 금융거래에 따른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평가·관리한다.
2. 저탄소 사회 기여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에 기여하며, 저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순배출량 “0”(Net Zero) 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3.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지원하여 환경·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
4.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환경·사회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5. 부정적 영향 배제 :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심대한 영역에 대하여 금융 지원 배제 정책을 운영한다.
6. 대규모 프로젝트 영향 완화 :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서비스 제공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파리협약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well below 2°C)으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음

2)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제15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국제합의로,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장기목표, 23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이행 로드맵

3) 국제금융공사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이행 표준(IFC 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 국제금융공사(IFC)나 협력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업체가 준수해야할 환경·사회 성과표준

4) 적도원칙(EP, Equator Principles) : 일정금액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

7. 정책 공개와 소통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공개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8.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 고객 및 피투자자의 환경·사회 관련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9. 역량 강화 : 전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환경·사회 리스크 인식을 제고하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10. 녹색위장 방지 및 전환금융 실효성 확보 : 녹색 및 전환금융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전환금융이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소고착화를 예방한다.

제 4 조 (적용 범위) ① 본 프레임워크는 그룹의 사업활동 전반(프로젝트파이낸싱,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포용금융,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될 계획이며, 그룹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활동 및 ‘금융지원 배제’와 ‘유의영역’에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 산업에 적용된다. 또한, 사업 영위 국가의 법률, 규정, 금융당국의 정책, 표준, 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② 사업부문별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 : 친환경 상품 출시, 포용금융 확대,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
2. 기업금융, 투자, PF : 환경·사회 리스크평가, 적도원칙 기반 심사, 고위험 산업 배제
3. 채권, 유동화 :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 발행 시 적격자산 선정, 자금의 사용, 보고 등
4. 자산운용 : ESG 요소 반영,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등

제 2 장 조직 및 역할

제 5 조 (조직 체계) ① 그룹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속한 구성원을 포함한 ESG 위원회와 지주 및 계열사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ESG협의회를 조직한다.

- ②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실무는 지주사 및 계열사의 ESG담당부서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되, 필요시 각 사의 리스크관리 담당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업할 수 있다.

제 6 조 (주요 기능 및 책임)

1. 총괄부서 : 지주사의 ESG 담당부서는 총괄부서로서 지속가능금융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부서 내 임팩트금융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거나,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그룹 내 지속가능금융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정, 성과 관리, ESG위원회 운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시 지주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지속가능금융 관련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2. 주무부서 : 계열사의 ESG담당부서는 주무부서로서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관련 역량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사회 리스크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경영진 : 지주 및 계열사의 경영진은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을 안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내부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금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ESG위원회 : 지주사의 ESG위원회는 그룹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전략, 정책, 목표를 심의하고 최종 승인한다.

제 3 장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

- 제 7 조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 구성)** 그룹은 지속가능금융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기후금융 관리체계, 임팩트금융 관리체계를 등 분야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8 조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① 환경·사회 리스크는 금융서비스 제공 대상의 환경, 사회적 요인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하며, 금융리스크 및 평판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1. 신용 리스크 : 환경·사회 리스크는 기업 부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유동성 리스크 : 환경·사회 리스크는 유동성 수요를 증가시키고 리파이낸싱 (Refinancing)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
3. 운영 리스크 : 환경·사회 리스크는 공급망 붕괴 및 사업장 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
4. 평판 리스크 : 환경·사회 리스크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증가시켜 외부자금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②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배재 영역, 환경·사회 유의 영역을 정하여 관리한다.

③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는 일반 기업여신 및 개발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상으로 하며, 리스크 심사 및 평가 방법을 정하여 관리한다.

④ 기업금융, PF, 투자, 자문 영역을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수립 기준은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제 9 조 (기후금융 관리체계) 기후금융(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적합성을 판단한다. 전환금융의 경우 차주사 또는 피투자사의 전환전략,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적을 판단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자금의 관리 : 채무자 및 피투자자가 녹색 또는 전환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이 사전에 약정된 경제활동에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용도 외 활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혜택을 취소하거나 회수하고 일반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금융 혜택 및 조치 : 녹색 또는 전환금융 취급 시 채무자 및 피투자자에게 금리 인하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단, 모니터링 결과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룹은 해당 금융에 대한 혜택 철회 혹은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제 10 조 (임팩트금융 관리체계) 임팩트금융은 재무적 수익과 더불어 측정 가능한 환경·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본 관리체계는 친환경 및 포용금융 등 ESG 금융상품을 통해 창출하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아래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화폐화 측정 원리 : 사회적 가치의 화폐화 측정은 이해관계자회계⁵⁾, 보수성⁶⁾, 준거 시장 기준⁷⁾, 추가성 원리⁸⁾, 할당의 원리⁹⁾를 따른다.
2. 화폐화 측정 방법론 : ESG 금융 상품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경우, 시장(가격) 기반 접근법 또는 비용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적 가치 정보의 활용 : 원활한 임팩트금융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주 내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가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4. 임팩트금융 대상 : 지주 및 계열사가 취급하는 ESG 금융상품 전반으로 하며, 지속가능금융협의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협의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5. 활용 방법 :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량적 판단 근거로 임팩트금융 측정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성과 관리 및 보고

제 11 조 (성과 지표 및 측정) 총괄부서는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의 자금 사용에 따른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지표를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임팩트금융의 경우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 단위로 측정한다.

5) 이해관계자회계 : IWAF(Impact-Weighted Accounts Framework),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측정하고 보고하는 회계방식

6) 보수성 : 재무회계의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성과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

7) 준거시장 기준 :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성과를 화폐화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시장(준거시장)의 가격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HM Treasury(His Majesty's Treasury) 가이드라인을 준용

8) 추가성 원리 : 기업의 활동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경과를 제외하고, 기업의 개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효과를 의미하며, 기후정책 연구, 사회적 가치 측정, 개발금융 분야 등에서 활용

9) 할당의 원리 : 성과를 주체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으로, Social Value International(SVI) 원칙을 활용

제 12 조 (내부 보고 및 대외 공개) 총괄부서는 녹색 및 전환금융의 규모,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취급에 따른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최소 연 1회 경영진에 보고해야한다. 또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공개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외부 검증을 실시한다.

제 5 장 개정 및 승인 절차

제 13 조 (개정 및 승인) ① 본 프레임워크의 제정 및 개정은 지주사 ESG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 국내외 지속가능금융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 또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검토한다.

③ 계열사로부터 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주사 ESG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 여부를 확정한다.

부 칙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비 고
제정	2025.12.18	2025.12.18	2025년 제2차 ESG위원회 승인